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89

제출연월일 : 2022. 11. 10.
제 출 자 : 서구청장

1. 개정이유

○ 보건소 부서 간 사무 조정을 통해 보건소 업무의 균형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(안 제2조 관련【별표1】)

1) 정신재활시설에 관한 권한,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리에 관한 권한 · 소관부서 변경 : 건강증진과 → 보건행정과

3. 개정조례안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지방자치법 제117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‘22. 10. 24. ~ 10. 26.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3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평가: 원안동의

5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의결

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”를 “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〔별표 1〕

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

소 관 부 서	일련 번호	위 임 사 무 명	근 거 법 령	비고
총 무 과	1	**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**		
		가. 연가계획 및 허가	「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제19조	
		나. 병 가	같은 조례 제21조	
		다. 공 가	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	
		라. 특별휴가	같은 조례 제23조	
보건행정과	1	**약국,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,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**		
		가. 약국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	「약사법」제20조	
		나. 약국 폐업 등의 신고	같은 법 제22조	
		다. 약국·의료기관 외에서의 약사 또는 한약사 의약품의 조제 승인	같은 법 제23조	
		라. 약국제제의 제조	같은 법 제41조	
		마.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의 등록, 변경등록, 휴.폐업, 재개 신고	같은 법 제44조의2	
		바.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	같은 법 제45조	
		사. 보고와 검사등	같은 법 제69조	
		아. 업무개시명령, 폐기명령, 개수명령 등	같은 법 제70조, 제71조, 제74조	
		자. 관리자등의 변경명령	같은 법 제75조	
		차.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	같은 법 제76조	
		카.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	같은 법 제76조의3	
		타. 청문	같은 법 제77조	
		파. 약사감시원의 임명	같은 법 제78조	
		하.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·징수	같은 법 제81조, 제98조	
	2	**의료기기판매(임대)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**		
		가. 판매업 등의 신고	「의료기기법」제17조	
		나. 보고와 검사 등	같은 법 제32조	
		다. 폐기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	같은 법 제34조, 제35조	
		라.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	같은 법 제36조	

소 관 부 서	일련 번호	위 임 사 무 명	근 거 법 령	비고
보건행정과		마.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	같은 법 제38조, 제56조	
		바. 청문	같은 법 제39조	
		사. 의료기기감시원 임명	같은 법 제40조	
	3	**지역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**		
		가.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행	「지역보건법」제7조 내지 제8조	
		나. 과태료	같은 법 제34조	
	4	**의료기관(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원, 부속의료기관)에 관한 다음의 권한**		
		가.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	「의료법」제33조, 제35조	
		나. 조산원의 지도의사 신고	같은 법 제33조 제6항	
		다. 휴업·폐업 신고 및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	같은 법 제40조	
		라. 지도명령	같은 법 제59조	
		마. 보고와 업무검사 등	같은 법 제61조	
		바. 시정명령 등	같은 법 제63조	
		사. 개설허가 취소 등	같은 법 제64조	
		아.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	같은 법 제67조, 제92조	
		자. 의료지도원의 임명	같은 법 제69조	
		차. 청문	같은 법 제84조	
	5	**안마시술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**		
		가. 개설신고	「의료법」제81조,제82조 및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제10조	
		나. 휴·폐업 신고	같은 법 제82조	
		다. 보고 및 업무검사 등	같은 법 제82조	
		라. 개설허가의 취소 등	같은 법 제82조	
		마. 지도·점검	같은 규칙 제8조	
	6	**의료기관 세탁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**		
		가. 세탁물 처리업의 신고	「의료법」제16조, 「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」제7조	
		나. 지도 및 보고	같은 규칙 제11조	

소 관 부 서	일련 번호	위 임 사 무 명	근 거 법 령	비고
보건행정과	7	**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**		
		가.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(양도,폐기,이전 등)신고	「의료법」제37조 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」제3조	
		나. 안전관리책임자 신고	같은 규칙 제10조	
		다. 지도 및 감독	같은 규칙 제16조	
	8	**특수의료장비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**		
		가.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	「의료법」제38조 「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제2조 내지 제4조	
		나. 서류의 작성, 비치, 보존 및 제출	같은 규칙 제9조	
	9	**치과기공소·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**		
		가. 개설등록 등	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	
		나. 폐업, 등록사항 변경 신고	같은 법 제13조	
		다. 치과기공소의 양도·양수 신고	같은 법 제13조	
		라. 보고와 검사 등	같은 법 제15조	
		마. 행정처분	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	
		바. 청문	같은 법 제26조	
		사. 과태료 부과징수	같은 법 제33조	
	10	**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**		
		가. 감염병 표본감시	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6조	
		나. 역학조사	같은 법 제18조	
		다. 건강진단	같은 법 제19조	
		라. 필수(임시)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의 공고, 예방접종 기록보존, 보고 등	같은 법 제24조 내지 제26조, 제28조	
		마. 예방접종증명서	같은 법 제27조	
		바.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	같은 법 제31조	
		사.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	같은 법 제36조	
		아. 감염병 위기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	같은 법 제37조	
		자. 감염병환자등의 관리	같은 법 제41조	
		차.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	같은 법 제42조	
		카.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통지	같은 법 제43조	

소 관 부 서	일련 번호	위 임 사 무 명	근 거 법 령	비고
보건행정과		타. 건강진단 및 예방 접종 등 조치	같은 법 제46조	
		파.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	같은 법 제47조	
		하. 감염병의 예방 조치	같은 법 제49조	
	11	**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**		
		가. 소독업의 신고 등	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52조	
		나. 휴업 등의 신고 수리	같은 법 제53조	
		다. 서류 제출·검사 등	같은 법 제57조	
		라. 영업의 정지명령 등	같은 법 제59조	
		마. 청문	같은 법 제75조	
		바. 과태료 부과·징수	같은 법 제83조	
	12	**대마재배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**		
		가. 허가 및 변경허가	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	
		나. 허가증 등의 발급 및 등재	같은 법 제7조	
		다. 휴·폐업, 재개업 신고, 양도금지	같은 법 제8조	
		라.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	같은 법 제13조	
		마. 대마재배자의 보고	같은 법 제36조	
		바. 검사와 수거	같은 법 제41조	
		사. 폐기명령 등	같은 법 제42조	
		아. 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정지	같은 법 제44조	
		자. 청문 및 과징금 처분	같은 법 제45조, 제46조	
	13	**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**		
		가. 결핵관리 종합시행 계획 수립시행	「결핵예방법」제5조	
		나. 결핵집단 발생시 조치	같은 법 제10조	
		다. 결핵검진 등	같은 법 제11조	
		라. 결핵예방접종	같은 법 제12조	
		마. 업무종사의 일시제한 및 재취업	같은 법 제13조, 제14조	
		바. 입원명령	같은 법 제15조	
		사. 입원결핵환자 등 생활보호	같은 법 제16조	
		아. 결핵환자 등의 의료	같은 법 제18조	
		자.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	같은 법 제19조	

소 관 부 서	일련 번호	위 임 사 무 명	근 거 법 령	비고
보건행정과	14	**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**		
		가. 환자가 여러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	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1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	
		나.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	같은 법 제31조, 제35조	
		다. 당직의료기관의 지정	같은 법 제34조	
		라.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신고	같은 법 제35조의2	
		마. 구급차 등의 운용신고 등	같은 법 제44조의2	
		바. 구급차 등의 말소신고 등	같은 법 제44조의3	
		사. 구급차 등의 지도감독	같은 법 제50조	
		아.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·자격 정지	같은 법 제55조	
		자. 청문	같은 법 제56조	
		차. 과징금	같은 법 제57조	
	15	**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**		
		가. 수리업의 신고·폐업·휴업·재개·변경신고의 수리	의료기기법 제16조	
		나. 보고와 검사 등	같은 법 제32조	
		다. 검사명령	같은 법 제33조	
		라. 폐기명령	같은 법 제34조	
		마. 영업소 폐쇄명령, 업무정지명령	같은 법 제36조	
		바. 과징금 부과징수	같은 법 제38조	
		사. 과태료 부과징수	같은 법 제56조	
	16	**정신재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**		
		가. 설치 및 변경신고	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	
		나. 폐지·휴지 및 재개신고	같은 법 제28조	
		다. 폐쇄 등	같은 법 제29조	
		라. 보고 및 검사	같은 법 제66조	
		마. 과태료 처분	같은 법 제89조	
		바. 청문	같은 법 제32조	
	17	**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**		
		가.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자의 진단 및 보호신청의 접수, 의뢰, 입원조치 및 통지	「정신건강증진 및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4조	
		나. 퇴원 및 처우개선 명령, 통지	같은 법 제44조	

소 관 부 서	일련 번호	위 임 사 무 명	근 거 법 령	비고
보건행정과		다. 입원조치 해제,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통지 등	같은 법 제62조	
		라. 임시퇴원 통보의 접수, 관찰 등	같은 법 제63조	
		마.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고·검사 등	같은 법 제66조	
		바. 과징금	같은 법 제20조	
		사. 과태료	같은 법 제89조	
건강증진과	1	**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**		
		가.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모자보건수첩 발급	「모자보건법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	
		나. 임산부, 영유아,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	같은 법 제10조	
		다. 난임 극복 지원사업	같은 법 제11조	
		라. 산후조리업의 신고 및 승계	같은 법 제15조, 제15조의3	
		마. 보고·출입·검사 등	같은 법 제15조의7	
		바. 시정명령,폐쇄,휴업,재개업 등	같은 법 제15조의8 제15조의9, 제15조의10	
		사. 과징금 부과·징수 및 청문	같은 법 제15조의11, 제15조의13	
	2	**주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**		
		가. 실행계획의 수립 등	「국민건강증진법」제4조의2	
		나. 계획 수립의 협조	같은 법 제4조의3	
		다. 금연 및 절주운동 등	같은 법 제8조	
		라. 금연을 위한 조치, 금연지도원	같은 법 제9조, 제9조의5	
		마. 건강생활실천협의회	같은 법 제10조	
		바. 보건교육의 실시 등	같은 법 제12조	
		사. 영양개선	같은 법 제15조	
		아.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·시행	같은 법 제17조	
		자. 구강건강사업	같은 법 제18조	
		차. 보고·검사	같은 법 제28조	
		카. 과태료	같은 법 제34조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	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17조 (사무의 위임 등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